

유기농산물 국제기준 문제와 우리 나라 유기농업의 과제 및 대응책

조 완 형인*

**Problems and Measures of Organic Agriculture in Korea under
CODEX Guidelines on Organic Foods**

Cho Wan-Hyung

〈목 차〉

- | | |
|-----------------------------------|--------------------------------------|
| I. 유기농산물 유통의 확대와 해외
유기농산물의 등장 | IV. 국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국내
유기농산물 기준 |
| II. 국제적인 유기농산물 기준 논의와
국내 유기농산물 | V. 과연 수입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
| III. 매우 엄격한 유기농산물 국제기준 | VI. 유기농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

I. 유기농산물 유통의 확대와 해외 유기농산물의 등장

최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기농산물 시장이 연간 20% 가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시장규모는 아직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지만 연간 약 500억 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유기농산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유통업계와 식품업계 등에서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망한 시장에 해외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유기농산물 가공품)이 들어와 우리나라 유기농업에 큰 타격을 가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가격도 싸고 품질 보증을 부착한 해외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이 우리나라의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에 큰 타격을 가할지도 모를 일이다.

* 사단법인 한살림 기획과장.

80년대 중반부터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생명, 건강,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약과 각종 유해 첨가물로 오염된 식품의 비안전성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또 수입농산물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입농산물의 비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겨나면서 유기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소비자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기농산물 유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 유통은 한살림, 한국여성민우회, 각종 생활협동조합, 한마음공동체(전남 장성) 등과 같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직거래 유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유기농산물 직거래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풀무원도 유기농산물 전문사업팀을 구성하여 부분적으로 유기농산물의 상업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9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산물의 시장이 더욱 확대되면서 유기농산물이 상업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팔당상수원지역에 유기농업을 보급하고 그 유기농산물 판매대책으로서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과 택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블루힐백화점, 삼성프라자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유기농산물 전문코너를 개설하여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중앙개발)도 내년 3월부터 유기농산물 택배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나 대기업들이 유기농산물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유기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등이 이유식의 원료로서 미국의 OTCO(Oregon Tilth Certified Organic : 미국 오레곤주에 있는 유기농산물 품질인증단체)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현미, 밀, 보리, 기장, 부추, 호박, 샐러리, 당근, 브로콜리, 신선초, 케일, 사과, 배 등 유기농산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시장확대는 국내 사정도 있지만, 구미(歐美)를 중심으로 한 유기농산물 국제기준에 따르는 세계적인 시대동향의 일환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미 낫쇼이와이(日商岩井), 스미모토(住友)상사, 미쓰비시(三菱)상사, 자스코, 니치레이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OCIA(국제유기농산물개량협회) 등 국제적인 품질인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다양한 유기농산물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식업체의 메뉴로서 유기농산물이 채용되기 시작하고, 유기농산물 전문수퍼마켓도 등장하고, 대기업들이 유기농산물 택배사업을 확대, 진출하면서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시작했으나 최근 판매강화의 움직임이 눈에 띠면서 수입 유기농산물의 취급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품질인증기관이 인정하는 채소와 과일까지 다양한 유기농산물을 폭넓게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유기농산물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안정적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국내 유기농산물과는 달리 우선 값이 싸고, 특정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대량 구비할 수 있고, 인증제도에 의한 품질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II. 국제적인 유기농산물 기준 논의와 국내 유기농산물

올해 CODEX위원회(WTO/FAO합동 식품규격위원회)가 유기농산물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일기준이 결정되면 엄격한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농산물만이 유기농산물로 인정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온난습윤한 생산조건하에서는 엄격한 국제기준에 안전하게 합치되는 농산물은 적을 수밖에 없고, 유기농업분야에서도 유리한 생산조건에 있는 미국이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구미 주도형의 국제기준에 적절히 대항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이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으로 정하여 지난 9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논의의 초점은 주로 국내적 사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의 공적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모아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논의의 초점도 국내 사정보다는 오히려 국제기준으로 표준화하는 문제로 옮겨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논의는 매우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 막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여유도 없이 조만간 국제기준 논의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현재 CODEX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국제적인 지침을 나타낸다. 이 국제기준을 작성하는 배경에는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의 유기농업단체가 세계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강한 의욕이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 강한 진출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일부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한 소규모의 유기농산물 직거래 중심이 아니라 유기농산물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자 자신이 조직한 민간인증단체가 수많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미국의 큰 품질인증단체는 OCIA(Organic Crop Improvement Association), OGBA(Organic Growers and Buyers Association), FVO(Farm Verified Organics), OTCO(Oregon Tilth Certified Organic),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 QAI(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수송단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독자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그 기준에 합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여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과 구미의 유기농산물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은 생산에 대한 자기인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구미의 유기농산물은 생산에서부터 말단의 유통에 이르기까지 chemical free로서 완전히 관리되고 그 내용이 제3자의 품질인증기관에 의해 품질이 인증되는 객관적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미국농업법(1990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과 그와 유사한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투입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품질인증기관은 각 농장과 가공공장에서 생산·가공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에 대해 매년 화학물질의 잔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동안 인증을 정지하며 1만달러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 기준은 구미의 유기농산물 기준보다도 매우 느슨하고 국제기준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유기농산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품질검사인증도 없고 양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없는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보다는 제3자의 품질인증기관에 의해 품질검사인증을 받은 값싸고 충분한 양을 조달받을 수 있는 해외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쉬울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유기농산물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기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각국의 식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동식물검역 등에 관한 규정을 국제기준으로 평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의 국제기준은 WTO(세계무역기구)에서도 채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CODEX위원회의 국제기준 검토작업이 거의 막판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도 조만간 이 국제기준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III. 매우 엄격한 유기농산물 국제기준

세계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시장에 강한 진출의욕을 보이는 미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시장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자 자신이 조직한 민간인증단체가 수많이 존재한다. 이 단체들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수송단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독자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합치되는 농산물에 대해 각각의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와 기업은 우선 회비를 내고 회원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인증을 받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다. 인가가 나면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의 벌칙을 받게 된다.

또 미국에서는 주법(州法)에 의해 유기농산물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주(州)가 30개에 이르고, 주가 직접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유럽 각국도 EU기준을 제정하여 각국이 인가한 민간단체가 인증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인증제

도를 정비하고 있다.

OCIA는 1947년 미국에서 설립된 대표적인 국제 민간인증단체로서 현재 세계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OCIA는 현재 50개국 4만명의 유기농 생산자와 3백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OCIA는 농지전체를 한 번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인정후 최저 5년이내에 100% 유기농업으로 이행해야 하고, 농약살포 농작물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차단 또는 최저 8미터 간격을 설치해야 한다는 등 우리나라의 농업적 상황에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OCI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① 어디의 회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 입밖으로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기밀유지 계약서를 맺어야 하고, ② 회비는 연간 150달러, 총매출액의 0.5%를 협회에 납부하고, ③ 회원에 가입하고나서 품질인증 신청을 받을 수 있고, ④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는데는 제3자의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결정사항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기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 생산자에게는 좋겠지만 이러한 유기농산물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안전하고 값싼 농산물이 밀어닥쳐 우리 농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식품규격(CODEX)위원회에서는 WTO와 연동하여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규격·기준 작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안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OCIA는 CODEX위원회에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OCIA와 계약하여 정보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뒤처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 기준에 각국이 따를 것인지, 즉 국제기준에 준거한 기준을 만들지 어떨지는 각국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비관세장벽(수입방해를 초래하는 제도, 관행, 조치 등)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무역의 불씨될 우려가 있다.

IV. 국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국내 유기농산물 기준

분명히 국내 유기농산물 기준은 애매모호하여 국제적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올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유기농산물 품질기준이 법으로 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은 유기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로 구분되며, 화학비료와 농약의 삭감 표시에 대해서는 화학비료는 농촌지도소의 추천시비량을 준수하고 농약의 살포횟수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농약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 1이하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총량도 명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용량 기준도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삭감기준은 애매모호하여 국제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96년 개정된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특별재배농산물에 관한 표시 가이드라인」과 같이 우리 나라도 유기농산물 표시를 유기재배와 전환기 유기재배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무농약재배와 저농약재배 등은 특별재배농산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기식품에 대한 품질기준은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국제기준에는 유기농산물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기식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조만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 기준하에서는 CODEX위원회가 엄격한 품질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구미의 기준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을 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큰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OCIA와 같은 구미의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끼워맞추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일이다.

구미형의 국제기준에 의한 품질인증을 부착한 값싼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이 수입되면 국내 유기농산물의 대부분은 비유기농산물로 전락되고, 결국 국내 유기농업 및 국내농업 전반이 새로운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제기준에 따른 수입 유기농산물이 밀어닥쳐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엄격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유기농산물을 개성화 상품으로서 판매하려는 대기업 등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국제기준은 원래 유럽의 지중해성 기후하의 전작농업과 축산업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몬순형 기후로 논농사의 무축(無畜)농업이다. 이와 같이 나라나 지역마다 농업의 역사, 풍토,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단순한 국제화는 한 나라의 농업을 붕괴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후, 풍토, 역사 등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단일기준을 만드는 것은 너무 난폭한 일이 아닐까?

국제기준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구미형의 농장제 농업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유기농업은 면적(面的)으로 연속한 농장단위로 실시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또 이 기준은 병충해 발생이 비교적 적은 냉량, 건조기후에 있어서 전작농업이 주된 대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잡초에 대해서는 기계적 제초효과가 높은 다년생 잡초우위의 생태적 조건이 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농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점이 많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경지가 영세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시아 농업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또 관배수의 반복이용을 전제로 한 논농사도 아시아 농업의 기본이다. 이러한 농업체제하에서는 일반농산물과 유기농산물을 명확히 구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기계제초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1년생 잡초가 번성하는 온난습윤한 아시아지역의 풍토적 특질에 대한 배려도 빠져서는 안된다. 따라서 비교적 건조한 나라와 지역에 적합한 국제기준을 모든 나라와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농업인

이 연대·협력하면서 아시아형 나아가서는 한국형 유기농업기준 작성에 대한 독자적인 노력이 조금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과 검토작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국가수준의 기준 작성작업이 선행되기에 앞서 먼저 생산자 자신에 의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미와는 기후 풍토가 다르다는 점만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무농약과 유기질비료로 재배하는 것이 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정말 무리한 것인지, 또 무농약과 유기질비료로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는 정말 없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농산물을 무농약과 유기질비료로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가 있으면 그 기술을 발굴하여 보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집적해 보지만 여전히 농약 사용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실을 국제적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다.

V. 과연 수입 유기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해외에서 수입된 유기농산물을 과연 유기농산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유기농산물은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여 벌레와 세균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수송중에 가스로 벌레를 죽이지 않는 한 수입검역과정에서 훈증처리를 지시받게 된다. 농약(인화늄정제, 예를 들면 에피튬, 포스톡신 등)으로 훈증처리되면 유기농산물로 볼 수 없으며 통상 재배한 일반농산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입하는 유기농산물은 보관, 저장, 수송, 검역 등의 목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용했을 때는 유기농산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내용을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조작작물)을 원료로 사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GMO 사용」 또는 「유전자조작식품」이라는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더욱이 유전자조작기술로 재배된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해외 유기농산물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판 이유식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서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유기농산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대와 인건비는 외국이 현격히 싸기 때문에 이렇게 훈증처리된 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로 표시되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된다면 국내 유기농산물은 점차 설 땅을 잃어 버릴 것이다.

VI. 유기농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안전하다면 수입 유기농산물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풍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지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만을 찾게 된다면 본래적인 유기농업의 본질을 왜곡할지도 모른다. 실제 미국의 일부 대규모 유기농장에서는 수십ha의 포장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대형기계로 벌레를 흡인한다든지 화염방사기로 제초하는 에너지 낭비적 유기농업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 외국인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위에서 성립하는 유기농업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벌채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환경파괴적인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식품의 안전성만을 찾게 되면 자칫 이와 같은 환경파괴적인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도 유기농산물로 인정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성만을 추구하고 유기농산물 기준만을 만족시키면 좋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경파괴적인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과 노동을 착취하면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이 된다. 이것이 본래 유기농업이 지향해온 것인가? 농산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보전, 인간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공생의 이념을 내세우는 운동이 바로 본래의 유기농업이 아닐까?

사람들은 하루 음식물을 1kg정도 먹고, 물을 2ℓ 정도 마시고, 공기를 5m³정도 호흡하면서 살고 있다. 유기농업이란 이러한 자연생태계의 어느 하나가 빠지더라도 왜곡되게 된다. 또 자연생태계의 보호이외에도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공생의 이념이 유기농업 운동에는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것이 유기농업운동인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식품의 안전성만을 유기농업에서 찾는 것은 큰 잘못이다. 유기농업이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기농업의 본질과 이념에 공감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유기농업을 육성해온 면이 강하다. 그리고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품질인증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우리 나라의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과 같은 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즉 지역사회 후원농업)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급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의 시장규모는 96년 330억 달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CSA운동에 참가하는 가족농업적 유기농장이 88년 10농장에서 95년 523농장(미국 490농가, 캐나다 33농가)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 운동에 참가하고 소비자들도 1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장지향적인 유기농업의 한계를 많은 가족농업적 유기농장이 깨닫기 시작하고 대규모 기업적인 유기농장의 가격경쟁력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은 『개방계 시장유통』에서 『폐쇄계 시장유통』으로 관점을 옮기고 있다. 즉 소비자를 고정표로 끌어들이고 자신들의 지원자로 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들은 유기농업운동의 이념과 특질을 근거로하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기

후와 풍토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행동이념과 방침을 제기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대항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민간수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유기농업 생산지침을 제창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식량자급을 기본으로 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생산자가 의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업모형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어 국내 유기농업 및 국내 농업전반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립농산물검사소,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연수결과 보고서』, 1997.

조완형, 「유기농산물 국제기준과 일본내 수입 유기농산물의 공세」, 『농민과 사회』 통권 제14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7.

古澤廣祐, 「有機農産物ビジネスの現状と可能性を探る」, 『農業と經濟』 第63卷 第7號, 1997.

大地を守る會, 「基準づくりから考える日本の有機農業」, 『がぶり』 第5號, 1997.

中島紀一, 「有機農産物基準論議の急展開 - 國內的論議の局面と國際基準問題 - 」, 『生活協同組合研究』 通卷 第253號, 1997.

ジョンペラミ, 「オーガニックフーズの國際動向 - アメリカのオーガニック基準とオーガニック認定をめぐって - 」, 『食品工業』 第40卷 第19號, 1997.

Robyn Van En, "Basic Formula to Create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Indian Line Farm, 1996.